

부산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심의 및 투표결과

I. 총학생회칙 개정 발의(안) 내용 및 심의결과

제1장 총칙 제4조(회원) ③항 추가 -->가결

재학생이면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우는 준회원이며, 각종 자치활동 및 행사에는 참석할 수 있으나 발의 및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 경품 및 경품권 지급은 불가하다.

(단, 준회원이 당선이 된 경우 총학생회비를 내고 경품과 경품권 받을 수 있다.

제2장 학생총회 제11조(소집) ①항 추가 -->가결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회원 1/10 이상의 요구, 상임위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단, 학생 상임위는 총학생회장, 부회장, 총학생회 임원, 각 학과대표 및 각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인수인계) ③항- 신설 -->가결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총학생회 업무 인수인계를 통보한다.

1. 임기만료일 7일전까지 업무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일 이후에 차기 총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선공고 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 하여야 한다.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임원 및 역할) ①항-6삭제 ②항-1변경 -->가결

6. 정책 국장 -> 삭제

② -1.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운행을 총괄 대표하며, 총학생회 회의를 주관하고 제13조 ①항의 임원을 선임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 2(임원의 자격조건) ①항-변경 -->가결

총학생회 임원 자격은 2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단, 편입의 경우 1학기 이상)로 회비 완납자(전년도와 당해 년도)에 한하며 미납자는 미납분을 완납한 후에 그 자격을 갖는다.

제4장 상임위원회 제16조 (의장) 변경 --> 가결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상임위 의장이 궐위 시 투표를 거쳐 상임위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제 7 장 집행위원회 제28조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③항-변경 --> 가결

총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구로서 사무국, 기획국, 재무국, 홍보국, 문화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제 7 장 집행위원회 제29조(각 국장의 업무 및 권한) ①항-변경, ⑤항-추가 --> 가결

- ① 사무국장은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총괄 확인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 ⑤ 문화국장은 동아리를 총괄하며, 동아리 관련 행사 있을 때 참석 또한 문화 활동을 한다.

제 8 장 사업 및 재정 제31조의 2(사업계획)추가, 제36조(준예산과 개정예산)①항-추가 --> 가결

총학생회는 상임위의 심의를 거친 1년 사업계획서 (예산안제외) 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 ①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까지 본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학생회장은 2개월간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상임위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장 선 거 제40조(선거 시기) ①,③항-변경 --> 가결

- ① 선거공고결과와 입후보자 등록기간은 투표일 35 일전으로 하고, 입후보자 등록마감은 입후보자 등록 시작일로 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 ③ 입후보자 확정 공고는 투표일 25일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학교홈페이지 및 총학생회 카페에 공고한다.

제9장 선 거 제47조의 2(당선공고) 변경 --> 가결

선관위 위원장은 차기 총학생회장의 당선이 확정된 경우 차기 총학생회장에게 서면으로 전달하고 이를 총학생회 게시판에 24시간 이내에 게시, 공포하여야하며 당선자에게는 당선결과 즉시 통지를 한다.

투표일은 18:00시부터 18:00(24시간)까지 투표결과까지이며, 선관위원은 17:30~18:00까지 참관 후 발표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50조 (개정절차) 변경 --> 가결
회칙개정은 아래의 개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II. 주요 개정 내용(정리)

제1장 총 칙 제4조(회원) ③항 추가	
현 행	개 정
재학생이면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우는 준회원이며 각종 자치활동 및 행사는 참석할 수 있으나 발의 및 의결은 할 수 없고 경품 및 경품권 지급은 불가하다.	재학생이면서 학생회비를 내지 않은 학우는 준회원이며 각종 자치활동 및 <u>행사에는</u> 참석할 수 있으나 발의 및 <u>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고</u> 경품 및 경품권 지급은 불가하다. (단, <u>준회원이 당점이 된 경우 총학생 회비를 내고 경품과 경품권 받을 수 있다.</u>)
표결 결과 : 찬성 12표 / 반대 1 - 가결	

제2장 학생총회 제11조(소집) ①항 추가	
현 행	개 정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회원 1/10 이상의 요구, 상임위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단, 상임위는 각 학과대표 및 전공대표로 한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회원 1/10 이상의 요구, 상임위의 재적인원 2/3 이상의 요구가 있을시 의장이 소집한다. (단, 학생 상임위는 <u>총학생회장, 부회장, 총학생회 임원,</u> 각 학과대표 및 각 전공대표로 구성한다.)
표결 결과 : 찬성 12표 / 반대 1 - 가결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인수인계) ③항- 신설	
현 행	개 정
	차기 총학생회장 당선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총학생회 업무 인수인계를 통보한다. 1. 임기만료일 7일전까지 업무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일 이후에 차기 총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선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 하여야 한다.
표결 결과 : 찬성 12표 / 반대 1 - 가결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임원 및 역할) ①항-6삭제 ②항-1변경	
현 행	개 정
6. 정책국장 1명 ②-1.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하며, 제13조 ①항의 임원을 선임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u>6.삭제</u> ② -1.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 대표하며, <u>총학생회 회의를 주관하고</u> 제13조 ①항의 임원을 선임하고,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표결 결과 : 찬성 12표 / 반대 1 - 가결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 2(임원의 자격조건) ①항-변경

현 행	개 정
총학생회 임원 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필한 자 (단, 편입의 경우 2학기 이상)로 회비 완납자(전년도와 당해 년도)에 한하며 미납자는 미납분을 완납한 후에 그 자격을 갖는다.	총학생회 임원 자격은 <u>2학기 이상</u> 등록을 필한 자 (단, 편입의 경우 <u>1학기 이상</u>)로 회비 완납자(전년도 와 당해 년도)에 한하며 미납자는 미납분을 완납한 후에 그 자격을 갖는다.
표결 결과 : 찬성 11표 / 반대 2 - 가결	

제4장 상임위원회 제16조 (의장) 변경

현 행	개 정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하고 궐위시에는 부회장으로 한다.	의장은 총학생회장으로 한다. (단, 상임위 의장이 궐위 시 투표를 거쳐 상임위 위원 <u>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u>)
표결 결과 : 찬성 12표 / 반대 1 - 가결	

제 7 장 집행위원회 제28조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③항-변경

현 행	개 정
총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구로서 총무국, 기획국, 재무국, 홍보국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총학생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집행기구로서 사무국, 기획국, 재무국, 홍보국, 문화국을 두며, 필요에 따라 상임위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기구와 부서를 둘 수 있다.
표결 결과 : 찬성 12표 / 반대 1 - 가결	

제 7 장 집행위원회 제29조(각 국장의 업무 및 권한) ①항-변경, ⑤항-추가

현 행	개 정
①총무국장은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총괄 확인하고 회의를 주관 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① 사무국장은 총학생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업무에 대하여 진행사항을 총괄 확인하고 회의를 주관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⑤ 문화국장은 동아리를 총괄하며, 동아리 관련 행사 있을 때 참석 또한 문화 활동을 한다.
표결 결과 : 찬성 12표 / 반대 1 - 가결	

Ⅲ. 기타 수정사항

- (1) 편제에 맞추어 내용 정리 (학부-->학부·학과)
- (2) 문맥, 내용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

※ 참고

- 자구수정: 오타,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 내용변경: 현재의 조항에서 내용 변경
- 내용추가: 신규 내용(조, 항, 호)추가
제43조 선거일 = 선거공고일이 기준
투표일 = 투표날짜 기준

[붙임] 조항별 상임위원 투표(서명)지

부산디지털대학교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주요 개정 내용

제15대 총학생회

제2장 학생총회 제1조(소집) ①항 추가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학생 1/10 이상인 요구, 상임부의 제안으로 소집한다. 2/3 이상의 과반수로 구성되며, 소집된 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학생총회는 총학생회장, 학생 1/10 이상인 요구, 상임부의 제안으로 소집한다. 2/3 이상의 과반수로 구성되며, 소집된 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규 및 학과 대표 의결

시정총회 의원	<input type="radio"/> 안부지	<input checked="" type="radio"/> 김동성	<input type="radio"/> 김양현	<input type="radio"/> 임석준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성	이철 선임	<input checked="" type="radio"/> 김태호	<input checked="" type="radio"/> 김태우	<input checked="" type="radio"/> 김성민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준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준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준	김희준

제1장 총회 제4조(회원) ③항 추가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생으로 학부(과) 소속 학생인 경우, 1/10 이상인 요구, 상임부의 제안으로 소집한다. 2/3 이상의 과반수로 구성되며, 소집된 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학생총회는 본교 재학생으로 학부(과) 소속 학생인 경우, 1/10 이상인 요구, 상임부의 제안으로 소집한다. 2/3 이상의 과반수로 구성되며, 소집된 후 1주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정규 및 학과 대표 의결

시정총회 의원	<input type="radio"/> 안부지	<input checked="" type="radio"/> 김동성	<input type="radio"/> 김양현	<input type="radio"/> 임석준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성	이철 선임	<input checked="" type="radio"/> 김태호	<input checked="" type="radio"/> 김태우	<input checked="" type="radio"/> 김성민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준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준	<input checked="" type="radio"/> 김희준	김희준

김희준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임원 및 역할) ①항-6삭제 ②항-1변경

기 준

수 정

6.삭제

3. 총학생회 1조
제1항.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제3조(총회의 임원들 선출)과 그 조항을 개정할 수 있다.

2. 제1항.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 대표하며, 총학생회 회의의 주권이고 제13조 1항은 임원을 선출하고, 수인의 안회를 실시할 수 있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경영	노인복지	재활상담 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경영	가족상담 상담	아.정 상담	미술치료	아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 공학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인수인계) ③항-신설

기 준

신 설

비 고

제3장 총학생회장 당선공고 후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총학생회 임무 인수인계를 통보한다.
1. 임기만료일 7일전까지 임무전반에 대하여 인수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2. 임기만료일 이후에 제1항 총학생회장이 선출된 경우에는 당선공고일부터 7일 이내에 인수인계를 완료 하여야 한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경영	노인복지	재활상담 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경영	가족상담 상담	아.정 상담	미술치료	아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 공학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제4장 상임위원회 제16조(의장) 변경

기 준

수 정

비 고

제4장 상임위원회 제16조(의장) 변경
제1항. 총학생회장은 본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대표한다. (단, 상임위 의장이 권위 시 투표할 거쳐 상임위

위원 중에서 1인을 선출한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경영	노인복지	재활상담 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경영	가족상담 상담	아.정 상담	미술치료	아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 공학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John Park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 2(임원의 자격조건) ①항-변경

기				수				비고
총학생회 임원 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을 발한 자 (단, 관외의 경우 2학기 이상)로 하며 0학년(학비 납부자)과 1학년(교과목 이수)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외의 경우 1학기 이상)로 하며 그 자격을 갖는 그 자격을 갖는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노인복지	재활상담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가족상담	아·청상담	미술치료	이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공학

제 7 장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③항-변경

기				수				비고
총학생회의 임원(총학생회)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 등록을 발한 자 (단, 관외의 경우 2학기 이상)로 하며 0학년(학비 납부자)과 1학년(교과목 이수)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외의 경우 1학기 이상)로 하며 그 자격을 갖는 그 자격을 갖는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노인복지	재활상담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가족상담	아·청상담	미술치료	이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공학

제 7 장 집행위원회 제29조(과 국장의 업무 및 권한) ①항-변경, ⑤항-추가

기				수				비고
총무국장은 총학생회(총학생회)를 포함하여 4학기 이상 등록을 발한 자 (단, 관외의 경우 2학기 이상)로 하며 0학년(학비 납부자)과 1학년(교과목 이수)은 포함하지 않는다. 관외의 경우 1학기 이상)로 하며 그 자격을 갖는 그 자격을 갖는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노인복지	재활상담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가족상담	아·청상담	미술치료	이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공학

김민지

제 8 장 사업 및 재정 제31조의 2(사업계획)추가, 제36조(준예산과 개정예산)①항-추가

총합상당한 상임위원 5인(총 7인) 1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부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12월 전까지 부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합상당한 2개월간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총합상당한 상임위원 5인(총 7인) 1년 사업계획서 (예산인제의)를 제출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부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12월 전까지 부예산이 통과되지 아니하였을 경우, 총합상당한 2개월간의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단, 상임위원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경영	노인복지	재활상담 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경영	가족상담	아·청 상담	미술치료	아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 공학

제9장 선거 제40조(선거 시기) ①, ③항-변경

① 임후보자 등록기간은 선거공고일 35 일전으로 하고, 임후보자 등록기간은 일반 복지 등록사직일로 부터 7일간으로 한다.

③ 임후보자 공고는 선거공고일 25일 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학교홈페이지 및 총합상당한 2개월간에 공고한다.

① 선거공고일과외 임후보자 등록기간은 투표일 35 일전으로 하고, 임후보자 등록기간은 일반 복지 등록사직일로 부터 7일간으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다.)

③ 임후보자 확정 공고는 투표일 25일 전으로 하고 선거관리위원장이 학교홈페이지 및 총합상당한 2개월간에 공고한다.

전공 및 학과 대표 의견

사회복지 경영	노인복지	재활상담 복지	경영학	외식조리 경영	가족상담	아·청 상담	미술치료	아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 공학

김연희

제9장 선거 제47조의 2(당선공고) 변경

기종		반고
수정	선거의 무효판결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투표시간은 전일 18:00시부터 18:00까지 투표결과까지이며, 선관위는 투표결과 당일 17:30~18:00까지 참관 후 발표한다.	

제10장 회칙 개정 제50조 (개정절차) 변경

사회복지	노인복지	생활상담	경영학	외식조리	가족상담	아.정 상담	미술치료	아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 공학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사회복지	노인복지	생활상담	경영학	외식조리	가족상담	아.정 상담	미술치료	아동보육	평생교육	사회복지	상담심리	보건행정	컴퓨터 공학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경영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상담

- II. 기타
- (1) 본제에 맞추어 내용 정리 (학부→>학부, 학과)
 - (2) 문맥, 내용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

*사회복지: 오다,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외식조리: 현재 의 조항에서 내용 변경
 *보건행정: 신규 내용(조, 항, 호) 추가
 *제43조 선거일=선거공고일이 기준
 *투표일=투표일 기준

~~총 68.54%~~ ~~반대 31.46%~~ 이결한다.

제 15대 총 학생회 회의록 NO-

회의
일시

2019년 11월 19일(화) 19:00

내 용

1. 안건

1.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상임위원회 최종 심의 및 의결(확정)의 건

2. 논의 사항

1. 제 1장 총칙 제 4조(회원) ③항 추가: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2. 제2장 학생총회 제11조(소집) ①항 추가: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3. 제3장 총학생회제13조 ② 항(인수인계) -신설: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4.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임원 및 역할) ②항 1번 변경: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5. 제3장 총학생회 제13조의 3 (임원의 자격조건) ①항 변경: 찬성 11표 / 반대 2표 --> 가결
6. 제4장 상임위원회 제 16조 (의장) 변경 : 찬성 11표 / 반대 2표 --> 가결
7. 제7장 집행위원회 제 28조 (집행위원회의 구성과 지위) ③ 변경: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8. 제7장 집행위원회 제 29조 (각 국장의 업무 및 권한) ①항 변경: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9. 제8장 사업 및 재정 제31조의 2(사업계획) 추가, ①항 변경: 찬성 11표 / 반대 2표 -가결
10. 제8장 사업 및 재정 제 36조 (준예산과 개정예산)③항 변경: 찬성 11표 / 반대 2표 -가결
11. 제9장 선 거제40조(선거 시기) ①,③항 변경: 11표 / 반대 2표 -가결
12. 제9장 선 거제47조의 2 (당선공고) 변경: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13. 제10장 회칙 개정제50조 (개정절차) 변경: 찬성 12표 / 반대 1표 --> 가결
14. 선거관련 내용 보완(제9장 선거)
 - (1) 선거일정과 관련하여 모호한 내용을 명확하게 정리
 - (2) '인수인계' 조항 신설 (제47조의5)
 - (3) 제43조 용어정리 (선거일 --> 선거공고일 기준, 투표일 --> 투표날짜 기준)
15. 기타
 - (1) 편제에 맞추어 내용 정리 (학부-->학부학과)
 - (2) 문맥, 내용이 모호한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
 - (3) 자구수정 (오타, 표현을 이해하기 쉽도록 수정)

- [회의자료] 1. 총학생회칙 개정(안)
2. 총학생회칙 개정(안) 심의(투표)결과

3. 결정 내용

위 내용의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은 회칙 제50조②항에 의거 상임위원 심의를 거쳐 최종 의결(확정) 되었습니다.
최종 심의·의결 날짜: 2019년 11월 19일
(총 13명 중 참석 인원 10명)

※ 총학회장 출마자의 ①성적제한 완화, ②본교 재학생 40명 서명 완화, ③학부(과)장 추천 폐지에 관하여 발의는 되었으나 심의과정에서 학교방침을 따르기로 하고 개정을 보류함

※ 개정 회칙 공포: 11월 24일

[참고] 제 10장 회칙개정 제51조(의결공포) ② 개정된 회칙은 회장이 5일 이내에 공포한다.

전공·학과	사회복지경영	노인복지학과	재활상담복지	경영학전공	외식조리경영학	가족상담학	아동청소년	상담심리학과
성 명	김경희	김경호	마명숙	이정오	조옥자	허민영	장송아	정연희
서 명								
전공·학과	미술치료학	아동보육학과	평생교육학과	사회복지학과	보건행정학과	컴퓨터학과		
성 명	안성미	강유미	이화진	박선남	차승은	대표 없음		
서 명								